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립 연월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나.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 다.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어 라.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추어 마.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2. 사업계획서 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